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5.

발 의 자 : 서영교 · 박희승 · 임오경
윤준병 · 위성곤 · 양부남
김문수 · 이성윤 · 박홍배
김동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기업·개인에 대해 증여세, 양도소득세,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·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. 농어업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, 연장 없을 시 농어업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.

이에 농업용·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,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,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,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등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2, 제107조의2, 제111조, 제111조의5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7조의2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11조의5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제107조의2(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 ① 외국인 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”이라 한다)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(이하 이 조에서 “환급대상 숙박용역”이라 한다)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11조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.

제107조의2(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 ① -----

- 2027년 12월 31일-----

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1조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) ① -----

---. -----2

027년 12월 31일-----

-----.

1. · 2. (생 략) ② (생 략) 제111조의5(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) ① 「해운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(이하 “내항 화물운송사업자”라 한다)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(이하 “한국해운조합”이라 한다)에 직접 공급하는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(이하 이 조에서 “경유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. ② ~ ⑤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111조의5(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